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수정의견 검토

□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 선택적 수록사항(혈액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모든 개인정보로 확대되어 통합신분증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로 규정 → 수록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수정의견 제24조 제2항)
-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식별 및 유추할 수 없는 체계로 구성 → 발행번호 생성원칙 명시 (수정의견 제24조 제3항)

□ 전자적 수록 관련 규정

- 전자적 수록 목적을 명확히 규정
→ 위변조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목적 명시(수정의견 제24조의2 제1항)
- 전자적 수록 정보 유출 및 데이터베이스 집적 우려가 있으므로
 - 수록정보의 제공요건 및 보안조치 등 기본원칙과 개인정보 전송금지를 법률에 규정
→ 전자적 수록 정보의 열람방법, 저장·수집 금지 및 보안조치 등을 법률로 규정 (수정의견 제24조의2 제2항 ~ 제5항)
- 리더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 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에 처벌 조항 등 명시
→ 법률로 벌칙조항 신설 (수정의견 제37조 제11호 추가)

현행	개정안	행안위 전문위원 의견	검토
<p>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생략)</p> <p>②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p>	<p>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주민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이 경우 제10호의 유효기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사진 6. 주민등록번호 7. 지문(指紋) 8. 발행일 9. 발행번호 10. 유효기간. 다만,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주민등록기관 12.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 	<p>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주민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이 경우 제10호의 유효기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11. (개정안과 같음) 12. 혈액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p>수용</p>
		<p>③ 제2항제9호의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유추할 수 없는 형태로 부여하여야 한다.</p>	<p>수용</p>
<p><신설></p>	<p>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외이주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이주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개정안 제3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행안위 전문위원 의견	검토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수록의 방법,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 또는 열람 방법, 보안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제24조의2 <신설>		제24조의2(주민등록증 정보의 전자적 수록 등) ①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주민등록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	수용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수용
		③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 중 전자적으로만 수록된 정보를 판독기(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는 전산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용
		④ 주민등록증에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는 판독기를 통하여 수집·저장할 수 없다.	수용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전자적 수록의 방법, 열람방법, 보안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용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7조(벌칙) ----- -----	제37조(벌칙) ----- -----	수용

현행	개정안	행안위 전문위원 의견	검토
<p>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2. (생략)</p> <p>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p> <p>4. (생략)</p> <p>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p> <p>6. ~ 10. (생략)</p>	<p>-----2천만원-----</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 제2항 -----</p> <p>-----</p> <p>4. (현행과 같음)</p> <p>5.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p> <p>6. ~ 10. (생략)</p>	<p>-----2천만원-----</p> <p>1. ~ 10. (개정안과 같음)</p> <p>11.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한 자</p>	